강의 권리 부여와 한국 법제에의 도입 가능성

임진아
지구와사람 학술팀장/
Global Alliance for the Rights of Nature(GARN) 아시아 태평양 지부 담당자



1. 서론

- 최근 낙동강에서 우리나라 고유종·멸종위기종 Ⅰ급 흰수마자가 10년 만에 다시 발견되며, 하천 생태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줌
- 그러나 4대강 본류는 여전히 보(洑) 건설로 흐름이 단절되고, 심각한 녹조와 메탄가스로 생태계와 주민의 식수 안전, 환경권 및 여가권이 위협
- 만약 강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다면,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는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
-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인 '**자연의 권리(Rights of Nature)**' 운동은 인간 중심의 법체계에서 벗어나 생태중심주의로 전환하고, 자연을 자원이나 관리의 객체가 아닌 독립된 권리 주체로 인정하려는 시도
- 본 연구는 해외 강의 권리 제도 사례를 검토하고, 한국 법제 속 도입 가능성과 과제,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을 탐구하고자 함



흰수마자

2. 본론

1) 해외 강의 권리 제도 이행 사례

- UN "Harmony with Nature" 프로그램(2009~)
- 세계 어머니 지구의 권리 선언(Universal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other Earth, 2010)
- 국제 강 선언(International Rights of Rivers Declaration, 2017)
- 에콰도르 헌법(2008), 볼리비아(2012), 뉴질랜드(2017), 파나마(2022), 우간다(2019), 방글라데시(2019) 등 국내법과 조례, 판례로 강의 권리 인정
- 강이 법적 인격(legal personhood)를 갖으며, **존재할 권리, 흐를 권리, 오염되지 않을 권리, 스스로 회복할 권리, 소송할 권리(원고적격)**를 가짐
- 강의 건강과 생태적 기능, 자연적 순환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함
- 강의 고유한 권리 뿐아니라 지역 공동체 및 생물 공동체 존중
- 인간은 강의 권리를 보장하고, 침해 시 이를 대변할 의무를 가짐

에콰도르 헌법 전문
새로운 형태의 시민 공존을 다양성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건설하기로 결정한다. 이는 *sumak kawsay*라 불리는 좋은 삶의 방식에 도달하기 위함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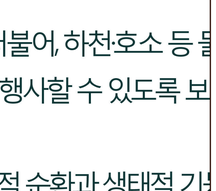
제71조
자연 또는 *Pachamama*는 생명이 재생산되고 존재하는 곳으로서, 그 생명주기, 구조, 기능 및 진화 과정을 존재하고 유지하며 재생할 권리가 있다. 모든 개인, 인민, 공동체 또는 민족은 공공기관 앞에서 자연의 권리 인정 요구를 할 수 있다.

강(국가)	시기	형태	주요 내용	후견인
아트라토 강 (콜롬비아)	2016	판례	-강 유역·지류를 법적 권리 주체로 선언 -생물문화적 권리(Biocultural Rights): 강의 권리는 지역 공동체의 생명·건강·문화적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 -사전예방원칙과 국가의 책무 강화	공동후견인 (국가와 원주민·지역공동체)
황가누이 강 (뉴질랜드)	2017	국내법	-「Te Awa Tupua Act」: 강은 하나의 살아있는 전체(물리적·형이상학적 요소)이며 법적 인격을 가짐 -인간과 분리되지 않는 생명 공동체 -강의 법적 권리 보전을 위해 유역 전체를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 -지역 공동체, 원주민, 지방정부,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와 관리기금 설치	공동후견인 (국가와 원주민 공동체 대표)
모든 강 (방글라데시)	2019	판례	-대법원은 국가 내 모든 강의 법적 권리 인정 - 인간의 생존과 강의 건강 불가분	국가하천위원회
맥파이 강 (캐나다)	2021	조례	-퀘백 주 망쿠시 지역 자치정부와 원주민 공동체의 공동 결의로 권리 부여 -지역 주도 생태민주주의 모델; 연방 및 주정부가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협치 사례	공동후견제도 (지자체 대표와 원주민대표)
마르 메노르 (스페인)	2022	국내법	-유럽 최초 자연물 법인격 부여 -시민청원에 기반한 시민 주도 입법 -최근 스위스·독일에서 환경정보 청구권의 법적 주체로 인정	공동후견제도 (마르메노르위원회:과학자,시민,지자체)

2) 한국 법제 및 현실과 강의 권리 적용 가능성

- 「하천법」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이용 중심의 관리에 중점
- 「물환경보전법」과 「자연환경보전법」 등은 인간의 환경권 중심으로 자연 보전을 규정
- 이전의 도룡뇽 소송과 산양 소송에서 보듯 자연물 자체의 권리 구제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
- 강의 이용은 자연적 기능과 생태적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, 하천의 자연적 순환과 생물다양성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

법률	개정안
「하천법」	• '하천의 존재·순환·회복의 권리' 조항 신설 • 제1조(목적)에 **'하천의 생태적 기능과 생명 유지'**가 이용과 관리, 인간의 익에 조화되도록 함으로써, -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삽입 • 제2조(정의) 2호 신설: **"하천의 생명권"**이란 하천이 자연적 흐름과 생 순환을 유지할 권리, 오염되지 않을 권리, 인간의 행위로부터 기능과 침해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. • 제51조(하천유지유량) 5,6항 신설: 하천의 생명권 보장과 수생태계 회 위해 확보,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하천관리청의 의무
「물환경보전법」	• 제1조(목적) 이 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과 더불어, 하천·호소 등 물 성체가 **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고유한 권리**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 함을 목적으로 한다. • 제2조(정의) 2호 신설: **"하천의 권리"**란 하천이 자연적 순환과 생태적 기 유지하며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, 흐를 권리, 복원될 권리 포함, • 3호 신설: **"수생태계 건강성"** 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와 적 요소, 그리고 진화적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물리적·화학적·생 소가 훼손되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
「환경정책기본법」	• 제13조의2(하천의 권리 보전) 국가 의무 및 하천후견인제도 신설 • 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한 환경을 보전하고, **자연과 인간이 상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**를 구현하기 위하여 생명 공동체로서 **자연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**하는 원칙을 포함한다. • 제3조(정의) **"자연의 권리"**란 자연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고, 그 생태적 기 조, 생명주기 및 진화적 과정이 유지·회복·재생산될 권리를 말한다.
「낙동강법」 등 특별법 제정	• 유역 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 → 수질·수생태·지하수·토지 이 통합적으로 관리 • 생태복원 및 권리 보장 조항 신설 → **강의 존재·회복·복원의 권 를 법적으로 명시** • **강권리위원회** 설치 → 국가·지자체·주민·전문가가 참여하는 거 넌스 기구 운영 • 하천유지유량·오염총량제 법정화 → 개발사업 전 단계에서 생 량 확보 의무화



3)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의 역할

- 강의 권리 제도는 법 조항만으로는 작동하지 않으며, 시민사회의 참여가 지속 가능성을 결정
- 뉴질랜드, 콜롬비아, 캐나다는 국가와 원주민 공동체를 후견인으로, 스페인, 호주는 지역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
- 한국도 **환경단체·주민·전문가가 함께하는 유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**이 필요
- 모니터링·시민과학·공익소송 등 시민 참여 활동은 제도의 실질적 집행력을 강화
- 결국 강의 권리 제도의 성공은 사회적 기반과 실행력에 있음

3. 결론

- 강은 인류 문명의 근원이자 생태계의 핵심 축
- 4대강 사업의 교훈은 강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
- 해외 사례들은 강의 권리 제도가 **개발 중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, 생태 보전과 복원의 새로운 틀**을 제공할 수 있음을 입증
- 이를 위해 후견인 제도, 사전예방주의 원칙, 환경공익소송, 시민사회의 참여가 함께 동반되어야 함
- 강의 권리 제도는 **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정립하고, 생태적·사회적 정의**를 아우르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나아가는 길